

政策討議시리즈 30
1986. 8

農工地區開發의 효율적인 推進方案

韓國農村經濟研究院

비

면

머 리 말

政府는 지난 3월 발표한 農漁村綜合對策에서 第6次經濟社會發展 5 個年計劃이 끝나는 1991년까지 총 100 個의 農工地區를 조성하는 長期農工地區開發構想을 밝힌 바 있다. 1983년말 「農漁村所得源開發促進法」이 제정, 공포되면서 農漁村所得源開發의 일환으로 착수된 農工地區開發은 그동안 강원도 횡성군을 비롯한 전국 7 個 市郡에 農工地區를 조성 완료하였으며 현재 21 個 農工地區豫定地區를 선정하여 적극적인 入住業體 誘致활동을 펼치고 있어서 바야흐로 農工地區開發事業이 본격화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그러나 이와같이 획기적인 政策構想과 그동안의 정부 및 관계기관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農工地區의 指定이나 造成, 入住業體 誘致 및 事後管理에 있어서 부분적으로 좀더 補完, 發展시켜야 할 政策課題들이 남아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 책자는 農工地區開發의 효율적인 추진방안 모색을 위해 지난 7월 2일 當研究院이 주최한 「農工地區開發에 관한 政策懇談會」에서 발표 및 討議된 내용들을 정리하여 엮은 것이다. 經濟企劃院, 農水産部, 商工部 등 중앙관계부처와 지방공무원, 학계, 연구기관 및 관련단체에서 50 余名이 참석한 이날 정책간담회에서는 農工地區의 효율적인 추진방안에 관한 주제발표와 이와 관련한 문제들에 대한 진지한 토의가 있었다.

특히 이번 토의에서는 農工地區의 指定方法과 支援의 差等化問題, 附帶施設의 範圍設定, 設計 및 施工監理主體問題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되었으며 그밖에도 未開發地方工業團地의 활성화, 農村工業推進行政體系의 정비, 농촌지역의 技能人力確保 문제의 중요성이 크게 지적되었다.

農工地區開發施策의 推進過程에서 發生하는 各種 問題들과 이에 對한 對策이 比較적 허심탄회하게 논의된 이번 政策懇談會의 結果를 정리한 이 資料가 政府의 政策方向樹立 및 關係기관의 行政實務에 많은 참고가 되기를 祈願한다.

1986. 7

韓國農村經濟研究院長 金 榮 鎮

目 次

머 리 말

主 題 內 容

農工地區의 효율적인 推進을 위한 政策方向 檢討 …… 崔鍾璨 …… 1

討 議 內 容 …………… 6

附 錄

1. 開會辭 …………… 39

2. 參席者 名單 …………… 41

빈

면

主題內容

農工地區의 效率的인 推進을 위한 政策方向 檢討*

崔 鍾 燦

經濟企劃院 産業1課長

1. '86年度 農工地區 豫定地區 追加 選定

〈現 況〉

- 현재 21個의 農工地區豫定地區 중 今年內 15個 정도는 農工地區 指定 및 造成可能
- 따라서 農工地區豫定地區의 추가적인 선정이 필요한 실정임.

〈對 策 方 向〉

- 京畿, 濟州道를 제외한 各 道別로 3個의 農工地區豫定地區를 常時 維持하되 農工地區豫定地區 中에서 入住需要가 확보되어 農工地區로 정식 指定된 個所數만큼 年中 수시로 農工地區豫定地區로 선정
- 이렇게 하면 各道別로 入住誘致與件이 유리한 지역의 선정을 유도할 수 있고, 入住需要確保에 관심을 촉진시킬 수 있으며, 豫定地區 선

* 本資料는 「農工地區 開發을 위한 政策懇談會」의 討論을 위한 基礎資料로 작성된 것이며, 討議主題는 本資料의 내용 뿐만 아니라 기타 農工地區開發과 관련된 모든 문제들이 포함될 수 있으므로 많은 政策代案이 제시될 수 있기 바 란다.

정이 수시로 발생함으로써 事業性檢討 등 業務集中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代案檢討〉

- 上記 對策方向의 代案으로 農工地區를 지정할 수 있는 모든 市郡(124個)에 農工地區豫定地區를 선정.
- 이와같은 代案은 農外所得源開發에 대한 기대감과 農漁村工業化 분 조성에는 기여할 수 있으나 入住需要가 많은 지역에 분산됨으로써 단 기간내에 農工地區造成이 불투명해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장기간 방치해 둘 경우 地價上昇 우려와 확실적인 農外所得源開發施策이라는 비난의 소지가 있으며 결과적으로 기대에 비하여 실제 조성 부진과 이로 인한 국민신뢰도의 저하가 우려됨.

2. 農工地區 豫定地區 選定方法

〈現況 및 問題〉

- 기존의 豫定地區 선정방법은 市郡이 미리 立地를 선정한 후 관계기관이 현지출장 등으로 그 지역의 農工地區로서 타당성을 검토하였음.
- 그러나 이 경우 선정된 단일 후보지의 적합, 부적합 판단에 그치므로 당해 지역내에 더 좋은 입지가 있는지 알 수 없으며 또한 부적합 판정시 새로운 立地選定과 현지출장 등으로 막대한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선정 후에도 立地를 변경하는 事例까지 발생.

〈對策 方向〉

- 道單位에서 農工地區豫定地區를 유치할 市郡을 미리 선정하고 市郡內에서 豫定地區의 立地選定은 당해 道 및 市郡과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조사하여 適地를 선정.

3. 農工地區 指定制限과 支援差等化

〈現況 및 問題點〉

- 地域別 工業立地條件 등 여건의 차이로 인하여 여건이 좋은 특정지

역에 入住需要가 집중

- 入住需要가 있는 데로 農工地區開發을 허용할 경우 여건이 유리한 특정지역의 개발만 촉진되는 한편 여건이 불리한 나후지역은 개발이 더욱 부진해 질 가능성이 있음.

〈對策方向〉

- 市郡別 農工地區造成可能 규모를 원칙적으로 延面積 10 만평 이하로 제한하되 工業立地與件이 불리한 지역으로서 농공지구지정이 아니고는 工場誘致가 어려운 지역과, 既造成되어 추가적인 投資가 불필요한 地方工團 등은 여건에 따라서 延面積制限을 완화
- 다만 農工地區豫定地區의 地區當 面積은 5 만坪이하를 원칙으로 함.

〈代案檢討〉

- 市郡別로 農工地區 造成面積이 5 만坪을 초과할 때는 融資 및 補助比率을 10%씩 減하는 등 國庫支援을 差等化
- 결과적으로 여건이 좋은 특정지역의 개발을 어느 수준에 유지시키면서 나후지역의 개발촉진

4. 附帶施設의 範圍設定

〈現況 및 問題點〉

- 農工地區의 부대시설에 進入道路, 電氣 및 通信施設, 用水施設 등은 포함되어 있어서 國庫로 지원되고 있으나 地區內 간선도로의 부담이 불분명하고, 간이하수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며 기타 共同利用施設 등 公共用地를 사전에 별도로 확보할 필요성 야기.

〈對策方向〉

- 地區內 주요 간선도로는 進入道路로 간주하여 入住者 부담에서 제외하고 간이하수시설의 경우 工團設計時 이를 포함하고 비용을 入住者 부담으로 함.
- 또한 분양대상면적은 용지매수면적의 80% 이상을 유지하도록 하되 공동이용시설용부지는 분양대상면적 1 만평당 250 평이상 확보하고 비용은 入住企業부담으로 함

5. 農工地區 設計 및 施工監理

〈現況 및 問題點〉

- 현재 農業振興公社가 農工地區의 조사설계 및 시공감리를 담당함으로써 첫째 정부투자기관이므로 豫算不足時에도 사업추진의 신축성을 기할 수 있고 둘째, 市郡의 工團造成에 관한 경험부족을 보완할 수 있으며 셋째, 지속적인 農工地區設計로 경험축적과 標準化가 가능할 수 있다는 측면이 있음.
- 그러나 일선 市郡에도 土木職公務員이 있는 실정에서, 실제 施工監理料率이 11.5%나 되기 때문에 農業振興公社의 設計 및 施工監理에 대해 일부 市郡의 불평초래.

〈對策 方向〉

- 農工地區의 調查設計는 새로이 지방용역회사에 맡길 경우 시행착오를 거듭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미 7個地區에서 경험을 축적한 農業振興公社가 계속 담당.
- 農工地區의 施工監理는 2個 市郡에 대하여 실험적으로 市郡이 담당하도록 하되 그 결과에 따라 향후 對策方向을 결정.

6. 未分讓, 未開發 地方工業團地의 活性化

〈現況 및 問題點〉

- 이미 지정된 地方工團 중에서 왜관 工業開發 장려지구 등 未開發地區가 4개 단지에 256만 坪, 論工工業開發장려지구 등 개발은 되었으나 아직 未分讓地區가 10개 團地, 68만 6천 坪이 남아 있어서 이들에 대한 활성화대책이 요청됨.

〈對策 方向〉

- 建設部가 현황을 파악하여 지역의 여건에 따라 活性化 對策을 수립하도록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農工地區로 개발.

7. 其他討議課題

- 行政組織 등 農村工業支援體系
- 國土計劃과의 연계문제
- 農村技能人力開發
- 地方의 金融 및 商工機能活性化方案

討 議 內 容

司 會 (成培永 韓國農村經濟研究院 副院長) :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討論에 참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 오늘 토론내용은 經濟企劃院 崔 課長께서 발표하신 문제들을 중심으로 하되 그밖에 農工地區開發과 관련하여 평소 생각하시던 바를 허심탄회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란다.

토의진행의 편의상 일선행정기관에서 실제 농공지구개발업무를 직접 담당하고 계시는 金東允 産業課長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다.

金東允(江原道 橫城郡 産業課長) : 저희 강원도 횡성군은 처음으로 농공 지구개발을 실시한 지역 중의 하나이다. 처음 해보는 사업으로 여러가지 어려운 점이 많았지만 經濟企劃院을 비롯한 相關중앙부처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이제까지 대과없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특히 韓國農村經濟研究院에서는 그동안 여러번 저희 郡을 직접 방문하여 현지 자문을 통해 많은 도움을 주는데 대해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그러나 일선에서 직접 실무를 담당하다 보면 중앙부처에서 公文이나 指針書 등으로 지시하는 사업수행지침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수 없이 많은 문제들에 부딪히게 되는데 여기서 그중 몇 가지만 간추려 말씀드리겠다.

먼저 농공지구로 지정되는 지역에 대해서 國土利用管理法상의 토지용도

변경 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 農漁村所得源開發促進法 및 同施行令에 의거하여 농공지구개발과 관련하여 많은 관계법규를 배제함으로써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고 있지만 그중에서 도시계획지구 밖의 지역에 농공지구를 지정할 경우 국토이용관리법에 의거하여 토지의 용도변경에 대한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농공지구 지정시에는 별도로 建設部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때 장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농공지구개발을 지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므로 농공지구를 지정, 고시할 때 일정의 심의 과정을 거쳐 농공지구의 지정과 동시에 토지용도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行政節次를 간소화해 주면 고맙겠다.

다음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농공지구로 일단 지정이 되면 市郡費를 지역의 실정에 맞게 투자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는 점이다.

현재는 농공지구에 입주업체가 50% 이상 입주할 때 사업이 착공되기 때문에 부지매입시 地價上昇이나 地上物補償 등에 예산을 낭비할 소지가 있다. 즉 농공지구의 대상부지가 대개 농경지이기 때문에 이미 재배되고 있는 작물에 대해 보상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예를 들어 工事が 지난 9월에 착공되었다면 당연히 농작물에 대한 보상을 할 수 밖에 없다. 다행히 횡성군에서는 郡費 2억 3천만원을 들여서 사전에 그 지역을 매입해 두었기 때문에 농작물보상금지출을 절감할 수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桑田이 많은 2차지구 사업에 대해서도 가을누에를 치기 전에 용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경제기획원에 건의드린다.

세번째로 지적하고 싶은 것은 농공지구내에 은행출장소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일차적으로 지정된 횡성 농공지구에는 7개 업체가 입주하여 분양을 완료하였으며, 그중 3개 업체는 공장건설이 완료 단계에 있고 나머지 공장들은 현재 건축 허가를 신청중에 있다. 이들 업체 중에는 수출업체도 3개나 포함되어 있는데 사업주들이 가장 불편을 겪는 점은 外換을 취급하는 地方銀行이 없기 때문에 하는 수 없이 本社를 서울에 두고 통관업무나 외환업무를 관장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는 비단 농공지구 뿐만 아니라 농

촌지역에 입지하고 있는 업체들이 일반적으로 겪는 문제점으로 공장이 집단적으로 입주하고 있는 농공지구에 200평 정도의 公共用地를 확보하여 은행출장소 등을 유치한다면 도시지역의 공장, 특히 수출업체들도 농촌지역으로 많이 분산될 수 있을 것이란 생각이 든다.

마지막으로 농촌지역에 농촌공업 관련업무를 전담하는 기구와 인력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市地域에는 商工係가 있어서 이들 업무를 전담하고 있으나 횡성군과 같은 농촌지역의 郡單位에서는 産業行政係에서 직원 2명이 動資部, 商工部, 農水産部 소관의 업무와 함께 農工地區 관련업무를 다루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실정으로는 郡의 통상적인 행정업무밖에 다룰 수 없기 때문에 시군에서 농공지구나 농촌공업관련업무를 전담할 기구의 인력이 보장되어야 하겠다. 그동안의 경험을 근거로 해서 일선에서 실무를 담당하면서 느낀 점을 몇 가지 말씀드렸다.

司 會 : 직접 경험하신 실무적인 문제들을 중심으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농공지구개발 과정상의 문제점을 더욱 생생하게 부각시킨 것 같다. 다음은 충남 呂寅喆 輸出工業課長께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란다.

呂寅喆(忠南道 輸出工業課長) : 저희 충남 公州農工地區가 예상의로 잘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우선 농공지구개발에 관계하고 있는 중앙의 여러 기관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참고로 公州 농공지구의 추진 현황을 간단하게 보고드리고 실무자의 입장에서 부딪치는 몇 가지 문제점을 건의하겠다.

공주농공단지는 공주군 장기면 송선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규모가 약 2만6천평 정도 된다. 입주희망업체는 30여개나 되었으나 사업성 검토와 환경영향 평가를 통해 적격판정을 받은 13개 업체가 입주하였으며 현재 10개 업체가 공장건설에 착공하고 있다.

그밖에 저희 道에는 금산군 복수면, 연기군 전동면, 천원군 직산면 등에 3개의 農工地區豫定地區를 지정하고 입주희망업체를 신청받고 있는데

예상보다 입주희망업체가 많이 몰려서 당초 8만5천 평을 확대할 계획으로 경제기획원에 신청 중에 있다. 현재 3개 豫定地區에 입주상황은 12만4천 평에 105개 업체가 입주 신청을 해서 사업성검토 결과 그중 약 48개 업체가 적격업체로 판정이 되었다. 지역별로는 천원군의 경우 이미 50%를 초과하여 농공지구 지정신청을 하였으며, 연기군은 당초 2만9천 평에서 4만5천 평으로 확대하여 적격판정을 받은 업체만도 16개에 4만9천 평의 用地를 필요로 하고 있어서 오히려 용지가 부족한 실정에 있기 때문에 3개 지역 이상의 特別指定을 검토하고 있는 실정이다.

충남도의 경우는 농공지구 개발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문제점을 말씀드리기가 어렵지만 그동안 추진과정에서 느낀 몇 가지 아쉬운 점을 말씀드리겠다.

우선 농공지구의 규모를 좀더 확대해야 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농공지구 개발지침에 의하면 市단위는 연 20만 평, 郡단위는 연 10만 평까지 농공지구를 조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郡단위에서도 연 20만 평까지 지정할 수 있도록 규모를 확대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

왜냐하면 충남 천원군의 경우 이미 5만2천 평의 농공지구개발이 완료 단계에 있는데 비해 현재 녹천면에 2만평, 성환에 2만평 정도씩의 농공지구를 추가적으로 특별지정할 계획이어서 전체적으로 4~5만 평의 용지가 필요한 실정에 있다. 따라서 郡지역의 연 10만 평의 제한을 탄력적으로 적용하여 입주희망업체가 적은 지역에는 市단위라도 연 10만 평으로 제한하고 입주업체가 많은 지역에 대해서는 비록 郡단위라도 20만 평까지 확대지정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건의드린다.

두번째는 입주신청업체에 대한 사업성 검토기간을 단축해야 한다는 점이다. 여기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도 와 계시지만 현재 입주신청업체에 대한 사업성 검토에 1개월 반 내지는 2개월까지 소요되고 있어서 효율적인 업무 추진에 제약이 되고 있다. 물론 전국을 대상으로 수 많은 사업체를 검토하다 보면 많은 시간이 소요되겠지만 가급적이면 빠른시일내에 결정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면 고맙겠다.

세번째는 전담인력 부족 문제를 건의드리겠다. 현재 충남의 경우에 道

에서는 수출공업과에서 행정주사보 한사람이, 군에서는 상공운수계의 계장과 직원 한사람이 농공단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만 이들이 운수나 기타 다른 업무까지 맡고 있기 때문에 깊이가 깊게 다루기 어려운 실정에 있다

따라서 道나 市郡의 농공지구담당부서에 토목직 공무원을 배치하는 등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저희 道같은 경우에 공주 농공지구의 준공검사시 수출공업과에 토목직이 없어서 건설국 농지과에 준공검사를 의뢰해야만 했기 때문에 절차가 번거롭고 추가적인 시간이 소요되는 경험을 해야 했다.

네번째는 농공지구와 관련된 중앙부처와 행정전화의 가설을 건의드린다. 현재 내무부나 농수산부와는 행정전화가 가설되어 시도 및 시군에서 종적, 횡적인 통화가 가능하지만 그밖에 경제기획원이나 상공부, 건설부 등과는 통화가 필요할 때마다 일일이 시외전화를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농공지구의 업무추진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 따라서 시도 또는 시군과 중앙관계부처에 행정전화를 가설함으로써 농공지구 사업추진 과정에서 야기되는 제반문제를 신속히 의논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마지막으로 농공지구개발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부대비를 인정해 주었으면 하는 건의를 드린다. 도 단위의 농공지구 추진과정상 부대비용은 차지하고라도 시군단위에서는 농공단지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부대비용이 없기 때문에 업무추진에 많은 지장이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농공지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행정부대비를 인정해 주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린다.

司 廳 : 아주 구체적인 좋은 말씀 대단히 감사하다. 다음은 입주업체의 사업성 검토를 담당하고 계시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의 金容和部長께 한 말씀 부탁드린다.

金容和(中小企業振興公團 農村工業部長) : 지금까지 呂寅喆 과장께서 지적을 했지만 농공지구 입주신청업체에 대한 사업성검토를 담당하고 있는 당 公團의 경우 때로는 각 市道 28個 농공지구에서 일시에 150여 건씩

검토 의뢰 서류가 밀리기 때문에 다소 검토 기일이 지연되는 것도 사실이다. 특히 이전이나 분공장의 사업성 검토는 비교적 손쉽게 해결할 수 있으나 신규창업체의 경우 상당한 기일이 소요되는데 비해 담당인력은 제한되어 있어서 실제 사업성검토 기간이 지연되고 있다. 참고로 그동안의 사업성검토 실적을 말씀드리면 1985년부터 1986년까지 당 公團에 접수된 480건중 적격 판정이 177건, 부적격 판정이 247건 그리고 현재 검토 중인 것이 56 건이다. 이를 사업 형태별로 살펴보면 전체 신청업체 480건의 약 50%인 230건, 적격 판정업체 177건중 44건이 신규창업체로 많은 신청업체에 비해 경영이나 기술능력미비로 부적격판정률도 매우 높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저희 공단에서는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 검토하고자 하니 각 시군에서도 가급적이면 입주업체가 신청을 하는 즉시 당 公團에 접수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부 지역에서 자기자본만으로 입주를 하겠다는 업체에 대한 문의가 있는데 비록 자기자본만으로 사업을 영위한다 하더라도 크게는 농공지구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만큼 시장, 군수들께서는 이들 업체에 대한 입주 허가시에도 다른 농공지구 입주업체와 마찬가지로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司 會 : 다음은 농공지구에 대한 설계 및 시공감리를 담당하고 있는 농업진흥공사의 徐權植 부장께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徐權植(農業振興公社 農村開發部長) : 경제기획원 崔課長께서 발표하신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1 항에 대해서는 결론적으로 시군당 2~3 개 지역의 후보지를 선정하겠다는 의견에 찬성한다. 현재의 후보지 지정방법은 부적합한 지역을 선정함으로써 사후적으로 위치를 변경하는 사례가 많은데 農振公의 조사결과 그 이유는 첫째, 당초 자연적인 立地條件이 불리한 지역을 선정한 경우로 남원은 산간지역, 함양은 저습지대에 각기 농공지구 후보지를 지정함으로써 변경이 불가피하였고 둘째, 공

주나 남원지역과 같이 團地내의 심한 標高差 때문에 실분양면적의 감소나 공사비가 과다하게 소요되는 경우이고 세번째는 천원군과 같이 농공지구 인근에서 工業用水 확보가 어려운 지역이 있고 네번째는 남원, 금산지역과 같이 대도시에 인접하여 농가구원의 취업이 우려되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다섯번째는 함양, 금산지역과 같이 용지규모가 과다하고, 분양가가 높이 책정될 가능성이 있거나 여섯번째로 기존시설물을 이전해야 하는 지역, 예를 들어 전남 영암지역의 경우 영산강 용수로를 이설해야 하는 지역을 선정함으로써 사업추진에 애로를 겪고 있다. 이상과 같은 사유로 인하여 농공지구지정시 2~3개의 후보지를 선정하고, 시군과 도 및 중앙 관계전문가들이 공동으로 좋은 지역을 선택하는 것으로 지정방법을 바꾸는 案에 찬성한다.

다음은 주제내용 3항의 농공지구지정제한과 지원의 차등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이는 지역별 여건의 차이로 인해서 일부 지역에서는 입주수요가 집중되는가 하면 다른 지역에서는 입주를 기피함으로써 지역간 균형발전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는데 그 원인이 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구당 분양단가를 일정하게 정해 주는 방안, 다시 말하자면 용지매수비는 전액 지방비로 충당하고 기타 공사비는 國庫로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검토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현재 농촌소득원도로개발의 경우 공사감리나 설계비는 전액 國庫로 지원하는데 비해 농공지구는 지방비로 충당하기 때문에 다소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주제내용의 제 4항인 附帶施設의 범위문제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현재 농공지구 부대시설에 대해서는 100% 전액 보조하고 있으나 부대시설의 범위에 진입도로와 전력, 통신, 용수시설만 포함되어 있어서 이와 유사한 성격을 갖는 기타 부대시설에 대해서는 보조율 20%인 부지조성비에 포함함으로써 사업비 單價가 높아지게 되며 일부 시군에서는 설계서에 포함된 기타 부대시설을 삭제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그러므로 농공지구내의 간선도로나 울타리, 조경공사, 기존시설물 이설, 가로등, 소화전, 하수처리장과 같이 부대시설의 성격을 갖는 것에 대해서 부대시설의 한계를 명백히 함으로써 보조율을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해야 할 것이다.

특히 간이하수처리시설의 설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입주업체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폐수의 종류나 폐수의 양을 정확히 추정할 수 없기 때문에 事前的으로 설계를 하는데 애로점이 많이 있다. 따라서 폐수처리장에 대한 설계는 사업체가 입주가동하여 폐수가 발생할 경우 폐수의 종류와 규모에 적합한 시설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본다.

마지막으로 주제내용 중 제 5 항의 농공지구설계 및 시공감리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어서 일부 시군에 대해 시법적으로 직접 시공감리를 담당하게 하겠다는 案에 대해서 의견을 같이 한다. 다만 이 경우에 시법적으로 공사감리를 직접 담당하는 시군만이라도 技術職 공무원을 증원시켜 주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왜냐하면 농공지구 조성이 단순하게 用地만 整地하는 것이 아니라 電氣, 上下水道施設 등 여러가지 공정이 포함되기 때문에 분야별로 전문직종을 갖지 않고서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司 會 : 여러가지 좋은 말씀 대단히 감사하다. 이제까지 일선에서 직접 농공지구 개발사업에 종사하시는 분들로부터 사업추진 과정에서 당면하는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문제들에 대한 의견을 들어 보았다. 그러면 이와 같은 문제들을 포함해서 그동안 직간접적으로 농공지구개발사업에 관계해 온 연구기관에서 토의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객관적인 입장에 있는 교수들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다. 우선 韓國農村經濟研究院 徐博士께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란다.

徐鍾赫(韓國農村經濟研究院 首席研究員) : 먼저 경제기획원에서 준비하신 토의자료를 중심으로 각 안들에 대해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그 후 기타 농공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다.

주제내용 중 1, 2 항의 농공지구예정지구를 도별로 3 개씩 유지하겠다는 안과 예정지구의 立地選定方法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경제기획원에서 제시한 의견에 이의가 없다. 다만 농공지구개발에 道の 적극적인 참여를 촉진하고, 계획적인 농공지구개발을 위해서는 道單位 長期農工地區開發計劃

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으로 제 3 항인 농공지구개발의 제한과 지원의 차등화에 대해서도 경제기획원의 郡單位 10만평 上限線에 이의가 없다. 다만 공업입지여건이 불리한 지역의 개발촉진을 위해서 당분간은 비록 여건이 좋은 지역이라 할 지라도 5만 평으로 규모를 제한하고 전체적으로 농공지구가 정상적으로 가동될 때 추가로 5만 평을 지정해 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되며 제 4 항과 5 항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견이 없다.

다만 제 6 항인 地方工團 중 총 256만 평이나 되는 未開發地域을 농공지구로 지정할 경우 입주업체 부족으로 기존의 소규모농공지구개발이 상당히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지방공단의 농공지구 지정 문제는 좀 더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기타 농공지구개발사업과 관련한 문제로서는 우선 추진행정체계가 좀 더 정비되어야겠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자 한다. 조금전 金東允 산업과장께서도 지적하셨지만 농촌공업 관련업무가 道 및 市郡單位에서는 매우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다. 예를 들어 農產物加工工場育成事業과 農漁村副業團地의 경우 대개 郡의 農產課, 道の 農政局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농공지구나 새마을工場建設事業의 경우 郡의 食산과와 도의 商工運輸局에서 담당하고 있어서 효율적인 사업추진과 사후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이들 농촌공업 관련업무를 전담할 부서를 신설하고 행정추진체계를 일원화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농공지구개발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또한 관련부처에서 농공지구개발 업무를 담당하고 계신 분들의 사기양양을 위해서 施賞制度를 도입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다음으로 國土計劃과 연계시키는 문제에 대해서는 농공지구조성 승인시에 국토이용계획법상의 토지용도 변경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된다.

농촌지역의 기능인력개발문제와 관련해서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농촌지역에 공장이 입지하더라도 실제 현지에서 기능인력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 단순노무자로 취업하는 사례를 많이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와 관련하여 농촌주민들의 취업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첫째, 도단위 농민훈련원이나 도내 工業系學校를 활용하여 농한기에 농민자녀들에게 기술 훈련을 시키는 방안과 둘째 보다 적극적인 정책으로 농공지구 입주업체에 취업하고 있는 농어민 자녀들에 대해서 훈련기간 중의 勞賃의 일부를 정부에서 보조해 주는 방안, 셋째 농민 자녀를 취업시키는 업체에 대한 세제지원방안, 넷째 농공지구 입주업체에 농가구원의 취업으로 인하여 농업 노동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농공지구 인근지역에 農業機械化事業을 우선적으로 실시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현재 농공지구 입주업체의 자금지원 즉 시설 및 운영자금의 취급 금융기관이 중소기업은행이나 국민은행으로 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농공지구가 군단위 지역에 입지함으로써 실제 이들 은행을 이용하는 데 상당한 불편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 문제의 경우 農協郡支部가 그와 같은 자금취급업무를 담당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아울러 현재 농촌지역의 금융구조가 농협이나 우체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앞으로 농촌지역에 공장이 많이 들어간다고 했을 때 이들 사업체에 대한 자금공급을 국가가 보조나 융자형태로 계속 지원할 것인지? 당장 현실적인 문제는 아니지만 언젠가는 닥칠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연구를 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이미 정부가 정책적으로 지원해서 추진되고 있는 농촌지역의 공업개발사업 중에는 새마을工場과 副業團地가 있다. 특히 부업단지의 경우 실제 小規模企業形態로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이미 정부가 많은 지원을 해서 현재 사업중인 농촌지역의 새마을工場이나 副業團地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금융지원 등을 통해 이들의 기업활동을 촉진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司 會：다음은 國土開發研究院 李廷植박사께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란다.

李廷植(國土開發研究院 首席研究員)：우선 주제내용 중에서 몇 가지 불

분명한 것을 여쭙어 보겠다. 조금전 경제기획원 崔課長께서 주제발표에서는 농공지구 연면적을 시군의 경우 10만평 이하라는 말씀을 하시고, 충남도 呂寅喆 과장께서는 시단위는 20 만평, 군단위는 10 만평까지 가능하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한계를 의미하는 것인지?

崔鍾燾(經濟企劃院 産業 1 課長) : 市郡當 조성가능한 延面積, 그러니까 1개 地區當 면적이 아니고 지역 전체로 郡의 경우 10만평, 市의 경우 20만 평까지 농공지구조성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李廷植(國土開發研究院 首席研究員) : 농공지구개발이 農村工業活性化를 위한 정책대안으로 제시된 줄은 알고 있지만 이 문제에 대해 깊이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세한 助言은 드릴 입장이 못되고 다만 제가 일반적으로 느끼고 있는 사항을 간단히 말씀드릴까 한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제내용 1항에서 제시한 “과연 농공지구를 각 道마다 몇 개씩 지정해야 하는지? 지정을 한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가?”하는 문제에 대한 제 생각은 일반적으로 수요가 있는 곳에 공업단지가 형성되기 때문에 구태여 정부에서 공업단지를 조성해 놓고 기업가들에게 “入住하십시오”하는 단계는 지났다고 본다. 왜냐하면 농공지구에 입주하고자 하는 업체들이 대부분 중소기업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공업단지를 조성해서 계획입지시키는 것 보다는 自由立地政策을 쓰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이지 아닌가 한다. 이 경우 정책적 수단은 토지이용 측면에서 국토이용관리법이나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활용해서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렇게 하여 工業立地條件이 좋은 首都圈地域 등에 입주업체가 과도하게 집중되면 이들 지역에는 보다 강력하게 토지이용규제를 하고 기타 지역에서는 다소 완화해 줌으로써 均衡開發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나라와 여건이 다르기는 하지만 타이페이에서는 環境保全法의 적용을 지역별로 차등을 둔다고 한다. 즉 타이페이 인근에 공장을 건설할 경우 매우 엄격히 환경오염에 대한 규제를 통해 기업이 도저히 타이페이에서는 기업활동이 어렵도록 함으로써 공장을

지방으로 분산시키고 있다 한다. 따라서 우리도 토지이용 측면에서 이와같은 자유입지정책을 써 보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다음에는 농촌지역의 기능인력 확보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한다. 금년 봄에 농촌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절대적으로 농촌의 기능인력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실감할 수 있었다. 앞으로 이와같은 현상은 더욱 심각하게 나타날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우리가 통상 논의하는 것처럼 “농촌기능인력을 육성해야 한다”, “농촌으로 기능인력을 데려와야 한다”는 등의 구호만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실제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심각하게 검토해야 될 줄로 믿는다. 代案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농촌지역에 풍부한 부녀자들을 社內訓練(on the job training)을 통해 기능인력으로 개발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싶다. 물론 이와같은 방법은 단순히 기업가의 노력만으로 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정부에서 기능훈련기간 중에 소요되는 임금의 일부를 보조해 주는 등의 보완적인 시책이 아울러 검토되어야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國土計劃과의 연계문제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도대체 우리나라에 工業團地의 종류가 몇 개나 되는지 알 수 없을 정도이다. 제각기 근거법을 달리하고 있지만 농공지구, 지방공업개발장려지구, 수출산업공단, 수출자유지역, 산업기지, 中小工團 등등해서 수 없이 많은 종류가 있는데 차제에 정부에서 잘 검토해서 再整備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다.

조금 전 미분양, 미조성 地方工團에 관한 언급도 있었지만 원칙적으로 농촌공업을 활성화시키고, 농촌소득을 증대하고자 하는 농공지구구성취지는 이해를 하지만 여기에 입주업체를 유치하기 위해서 지나치게 많은 혜택을 준게 아닌가 생각된다. 藥도 너무 극약을 쓰면 다음에는 그 보다 더욱 강력한 극약을 써야 하듯이 농공지구를 통한 공업화정책이 장기적으로 성공하지 못할 경우 이 보다 더 많은 혜택을 주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재검토를 해 봐야 할 것이다. 아울러 농공지구에는 많은 혜택을 제시하면서 이미 조성, 분양된 지방공단은 건설부에서 알아서 처리하라는 식의 사업추진은 매우 위험한 정책구상이 아닌지 모르겠다. 우선 분양가가 싸고 많은 금융, 조세지원이 있는 농공지구에 입주하지 누가 지방공단에 입주하

려 할 것인가?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정부에서 이와같은 지원혜택을 부담할 능력을 갖추고 있는가 하는 사실도 문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이미 지정한 지방공단의 경우는 단순히 건설부차원이 아니라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대책을 강구하지 않는 한 상당한 자원의 낭비가 예상된다. 이상으로 잘 몰라서 두서없이 평소 느낀 바를 말씀드렸다.

司 會 : 이제까지 토의하신 분들과는 다른 관점에서 농공지구가 당면한 문제들을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더욱 흥미로왔던 것 같다. 다음은 韓國開發研究院에 계신 金鍾基박사께 한 말씀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金鍾基(韓國開發研究院, 研究委員) : 그동안의 농공지구 추진과정, 특히 공장의 입지실태를 살펴보면 수도권에 인접한 충남북 지역에 비해 전남북 지역 등이 입주업체 수나 입주업체종에 있어서 훨씬 취약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천원군의 경우 당초 3만 2천평 정도를 계획하였으나 입주업체들이 많이 몰려 5만평 규모로 확대할 계획으로 있는데 비해 남원군은 실제 2개 업체만 입주하고 있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입주업체의 業種에 있어서도 충남북 지역에서는 다양한 성장업종이 입주한데 비해 영암군과 같은 지역에서는 사양산업이 입주하고 있는 실정으로 당초부터 매우 취약한 산업구조를 갖고 시작한다고 하겠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농공지구가 기대 이상의 성공을 거두고 있는 것은 금융지원을 비롯한 각종 지원혜택에 크게 힘입은 것으로 이해된다.

주제발표하신 내용에 대해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제 1항의 경우 대체적으로 동의하지만 부분적으로 염려되는 것은 6次 5個年計劃이 끝나는 1991년까지 100개의 농공지구를 조성하겠다는 구상이다. 그 이유를 지역차등화 및 地方工團問題와 연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의 시군 중에서 휴전선 인근의 접적지역, 강원도 산간오지, 경기도의 首都圈地域, 전남북 및 경남북의 산간지역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공업단지형태로 공장을 집단화할 수 있는 지역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농공지구의 개발가능성은 제한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농촌지역의 기능인력 확보가능성 역시 농공지구개발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데 전북 장수군의 한 組立工場의 예를 들면 설립당시 약 70명을 고용하고자 하였으나 가동 1년 후까지 40여명 정도 밖에 확보하지 못하였으며 이들 역시 일정 수준의 기술을 습득하고는 대도시나 인근도시로 나가버리기 때문에 기능인력 확보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었다. 1개 기업체가 입지해도 노동력 확보가 어려운데 團地規模로 5~6개 업체가 입지할 경우 매우 어려운 상황에 부딪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노동력 확보라는 측면에서도 전체적으로 1郡 1개 농공지구는 재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제 2항의 農工地區豫定地區 선정방법에 대해서는 큰 이의가 없고 제 3항 농공지구 지정제한과 지원차등화에 대해 한 말씀 드리코자 한다. 지역차등화의 경우 주제발표 내용과 같이 5만 평을 초과했을 경우에 차등지원 하는 것도 한 방법이지는 하지만 저는 지역별 工業立地與件이 나쁘거나 낙후지역 등에 좀더 많은 혜택을 주는 지역차등화 정책을 건의하고 싶다. 그 이유는 중부권 지역의 경우 큰 지원 혜택을 주지 않아도 장래 5~10년을 내다보면 충분히 工業立地가 될 여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각 지역에 공히 지원하는 것 보다는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실정에 맞도록 차등지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부대시설의 범위 설정이나 시공감리에 대해서 특별한 의견이 없고 제 6항의 미분양, 미개발 지방공업단지의 활성화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이 문제는 결국 농공지구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문제와 상당히 밀접한 관계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농공지구문제에만 국한해서 볼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지방공업 전체와 연관해서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기본적인 농공지구개발 구상은 농외취업의 증대를 통해서 農外所得을 높이는 것으로 地方工業의 육성목적과 크게 다를 바 없다. 지방공업단지, 예를 들어 전주, 이리, 군산에 地方工業團地가 있는데 여기에 주변지역의 농촌주민들이 취업을 함으로써 農外所得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그 이름이 地方工團이든 혹은 農村工業이든 간에 취업대상자인 농민의 입장에서 農外就業의 기회를 얻을 수 있다면 구태여 구분할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라는게 기본적인 생각이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유사한 취지로 추진되고 있는 지방공업단지나 농공지구는 지방공업육성이라는 큰 테두리 안에서 조정되어야 하며 다행히 지방공업장려지구가 없는 지역에 농공지구를 조성했기 때문에 이들 지방공단은 계속 육성해야 할 것으로 본다. 아울러 차제에 7가지나 되는 각종 工業團地造成施策은 체계적으로 정비되어야 하며 이 경우 조금 전에 말씀드린 지역 차등화도 아울러 고려되어야겠다는 생각이다.

마지막으로 농공지구개발과 관련하여 지방의 상공행정기능의 강화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하며 아울러 地方特化産業 또는 지장산업과 같이 지역에 바탕을 둔 사업을 계속적으로 발굴, 육성해 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다.

司 會 : 좋은 말씀 감사하다. 다음은 충북대학교의 成濬根 교수께 한 말씀 부탁드린다.

成濬根(忠北大 農業經濟學科 教授) : 農工地區開發에 관한 깊은 연구는 없었으나 진천농공지구를 답사한 경험과 개인적 의견을 바탕으로 말씀드리겠다.

최근 都農間의 소득격차가 심화되는 현실에서 農外所得을 확대시키기 위한 농공지구의 개발은 매우 바람직하며, 또한 관련부처의 적극적 지원 속에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은 기쁜 일이다.

다만, 몇 가지 우려되는 것은 첫째로 농외소득의 개발, 국토의 균형개발, 대도시 인구과밀화의 해소 등과 같은 農工地區開發의 目的이 뚜렷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忠北 鎮川의 경우 입주수요가 문제되지 않지만 首都圈에서 멀리 떨어진 다른 지역에서는 입주수요의 부족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농공지구개발 및 입주업체에 대한 지원차등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즉 국토의 균형적 개발이라는 전제속에 入住需要가 적은 農工地區에 더 많은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두번째는 入住業種에 관해서 말씀드리고 싶다. 농공지구의 입주업종의 선택은 원칙적으로 농촌의 유희노동력과 그 지역의 자원이 동원될 수 있

는 업종이 선택, 입주되어 좀더 많은 부가가치가 해당농촌에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가령 도시에 입지가 가능한 업종이 農工地區에 입주한다면 노동력의 부족현상과, 자본의 도시로의 역류 현상을 야기시킬 것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鎭川農工地區의 業種選擇을 예를 들면, 소세지공장, 참기름공장, 농산물건조공장은 심사에서 제외되고, 화공약품공장, 목공장, 섬유회사 등이 사업성이 좋다는 이유로 선정되었는데, 이러한 사례를 고려할 때 業種選定基準이 획일적이지 않나 생각된다.

세번째로, 入住業體誘致方法과 관련해서 도시주변의 대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소세지공장, 통조림공장 등을 정부에서 입주수요가 적은 곳에 유치하는 방법이 강구되었으면 한다. 郡에서 입주업체를 유치하고 中振公에서 사업타당성 검토를 할 경우 地域內에의 자본과 부존자원을 활용하고자 하는 업체들이 입주를 못함으로써 장기적으로 농공지구의 개발이 제약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南原과 함양의 경우 대도시 인근에 입지한 대기업의 계열기업을 入住케 하여 이 지역의 농산물 및 부존자원을 이용함으로써 보다 많은 부가가치를 이들 지역에 떨어뜨리는 것이 바람직한 농공지구개발 방안의 하나라고 생각된다.

네번째로, 제주도내 農工地區를 1個所로 결정한 것과 관련하여 생각해 본다. 제주도민은 현재 공장이 없고, 공해가 없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을 것이다. 제 생각에도 농촌소득을 위해 공장을 새로 유치하기 보다는 기존의 관광산업을 중심으로 한 개발방향을 고양시켜, 국민의 휴양 및 관광공간과 전통자원의 보존공간으로 제주도의 특수성을 살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제주도에 농공지구를 지정하는 것은 찬성하고 싶지 않다.

다섯번째로, 鎭川을 事例로 農工地區의 설계 및 시공감리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한다. 鎭川은 이미 일부 업체가 입주, 가동중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상수도 시설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한다. 設計 및 施工을 農振公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아마 全國을 대상으로 하다보면 불가피하게 지연될 수 있으리라고 본다. 그러나, 현지의 의견은 鎭川郡 전체에 토목기사가 총 26명이나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힘으로 기존의 경험을 바탕으로

施工監理는 가능하다고 한다. 제 생각에도 조금 미흡한 면도 있겠지만, 地域資源의 活用, 人力訓練, 未來의 지방자치제 실시 등의 요소를 감안하여 중앙의 전문기관에만 의존하지 않고, 市郡의 독자적인 시공감리를 허락하는 것도 고려해 주셨으면 한다.

여섯번째로, 금융해택의 문제로서 鎭川郡의 경우 국고보조가 30%, 지방비 부담이 70%인데, 지방비가 단기자금으로 용자되어 業體 측에서 대단한 부담을 느끼는 것 같다. 현지에서는 홍보상의 용자해택 내용과 실질적 또는 세부적 용자내용의 차이로 인식되어 불만의 여지를 남겨 놓지 않으나 해서 제가 들은 대로 지방비 상환기간의 연장을 건의드린다.

마지막으로, 農工地區에 업체가 入住하면 지원 자금이 유입될 터인데, 그 자금이 大都市로 유출되지 않고 계속 그 지역에서 회전되도록, 徐鍾赫 박사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농협과 우체국의 여신업무를 확대하는 등과 같은 지방금융육성대책을 서둘러 세워 줄 것을 강조하고 싶다.

司 會 : 직접 현지답사를 하시고 말씀해 주셨는데 대단히 감사하다. 다음은 서울대학교의 朴杉沃교수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朴杉沃(서울大學校 地理學科 教授) : 農工地區研究에 직접 참여는 하지 않았지만 평소 우리나라의 工業化過程과 工業立地에 많은 관심을 가진 관계로 農工地區設定에 관한 몇 가지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한다.

첫째, 農村工業開發 방법에 대해서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을 것 같다. 한 가지 방법은 시장개방정책에 따른 공업입지의 변화에 의해서 교외지역, 또는 비도시 지역의 공업화가 진행되면서 農村開發問題가 해결되는 경우이고, 또 다른 한 가지 방법은 농촌의 소득향상과 고용창출 및 지역간의 균형개발에 초점을 둔 農村工業育成이라고 할 수 있겠다. 제 생각에는 우리나라가 후자에 해당되는데, 과거의 새마을공장을 되새겨 볼 때, 農工地區의 開發은 위 두 가지 측면에서 신중히 접근해야 된다고 본다.

우리나라의 공업입지변화에 있어 60년대는 대도시 집중화, 그 이후는

대도시 주변으로의 郊外化, 즉 대도시권내의 分散化가 특징이고, 또하나의 경향은 都市體系內에서의 分散 즉 중소도시로의 이전 및 분공장설치라고 할 수 있겠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工業化 및 國家工業發展의 단계와 관련시켜 효과적으로 농촌공업을 육성시키는 방안이 논의되었으면 한다. 국토의 균형개발에 초점을 둔다면, 수도권지역, 부산권지역, 그리고 공장입지가 전혀 불가능한 산간오지 지역을 제외하면 農工地區를 설치할 가능지역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한정된 지역 중에서 정부의 지원없이도 개발될 수 있는 곳과 전혀 개발가능성이 없는 곳을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것 같다. 예를 들어 충청도는 가만히 두어도 가까운 장래에 공업화가 될 수 있는 지역으로 판단되는데, 스스로 공업단지가 될 수 없는 산간오지 등을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것에 農工地區開發의 초점이 모아졌으면 한다.

둘째로, 農工地區의 선정에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을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다. 이미 앞에서 노동력확보의 어려움이 논의되었는데, 저는 이를 통근권 문제로 일괄해서 말씀드리고자 한다. 農工地區를 中心으로 새로 도로를 개설할 수는 없기 때문에 기존의 교통시설, 교통망 등을 충분히 고려하며, 순수한 농촌이나 작은 면소재지보다는 그 지역의 中心地域함을 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점은 농촌공업지원체계, 농촌기능인력개발문제와도 관련된다. 뿐만 아니라, 기존의 하부시설과 생활편의시설을 활용할 수 있어 투자비를 절감하리라고 판단된다. 현재의 農工地區의 선정방법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농공지구를 100개로 한다 또는 全郡에 지정한다는 점은 다소 무리하지 않나 생각한다.

세째로 이미 成滯根교수께서 말씀하셨지만 農工地區를 조성하여, 農民의 소득수준을 향상시키고 고용을 창출하자는 것이 결국 農村을 개발하자는 문제로 압축되는데, 農工地區는 단기적인 목표보다도 장기적으로 國家 전체의 工業構造와 工業化 그리고 지역의 공업체계 또는 국가의 공업체계를 충분히 고려하여 지정되어야 한다. 즉 장래 그 농촌지역의 需要를 충족하고, 외부업체와 경쟁할 수 있고, 더 나아가 국제시장의 경쟁에도 나설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현 단계에서 정확한 평가를 하기는 어렵지

만 과거의 새마을공장의 교훈을 유념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아울러, 農工地區를 성공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을 간단히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한다.

첫째, 農工地區의 工業活動이 그 농촌지역 또는 그 지방과 수평적인 통합을 이룰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다시 말하면, 農村地域의 농업활동과 공업활동이 대등한 입장에서 수평적으로 相互補完的인 관계를 맺어야 한다. 즉 농업의 기계화로 인한 유희노동력이 공업에 흡수되어 농촌에 거주하며 농사를 지을 수도 있고, 農工地區에 가서 일할 수도 있으며, 농한기에 일시적으로 일할 수도 있어야 한다. 또한 業種選擇에 있어서도 농촌의 부족자원과 노동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즉 농촌의 經濟活動과 연계될 수 있는 업종의 선정이 필요하다.

둘째, 수직적인 통합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농촌공업을 농촌끼리만 연계되어서는 안되고, 국가의 공업체계 또는 國土의 다른 지역과 유기적인 체계를 유지해야 된다는 점이다. 대도시와 중소도시 그리고 농촌에 입지가능한 업종을 선별하여, 이들간의 상호보완을 이루어, 결국 농촌지역과 도시지역이 상호 연계되어 수직적인 통합을 이루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농촌은 勞動集約的 産業이 좋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이제 단순한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탈피할 때가 되었다고 본다. 그동안 농촌의 교육수준과 기술수준이 많이 향상되었다고 전제한다면, 農工地區에도 技術集約的이고 자본집약적인 업종을 개발하여 입주시키는 것이 장래 농촌의 발전에 크게 도움이 되고, 좀더 근본적인 농촌공업의 해결책이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司 會 : 대단히 감사하다. 다음은 韓國農村經濟研究院의 崔洋夫박사께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다.

崔洋夫(韓國農村經濟研究院 研究委員) : 農工地區開發方法에 관한 논의가 상당히 진전되었다는 느낌을 이 자리에서 받는다. 왜냐하면 오랜 기간

동안 農村工業開發에 관한 原論的 討議가 이루어져 왔는데 이제, 그 기본 방향이 나름대로 확립된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그동안의 農村工業에 관한 討議의 진행과정을 돌이켜 보면, 첫단계에서, 農村工業開發의 必要性에 관한 정책적 論議가 있었고, 다음 단계에서 農村工業開發의 접근방법에 관한 논의의 결과로서, 集團立地 및 소규모의 團地를 전제로 한 農工地區開發方法이 代案으로 제시되었다.

오늘의 討議가 세번째 단계로 생각되는데, 전반적인 論議의 흐름이 農工地區開發이 본격화되면서 이에 따라 파생되는 문제점에 집중되는 것으로 느껴진다. 오늘 논의된 내용을 제나름대로 정리해 본다면, 農工地區開發과 地方經濟의 수평적 결합문제, 農工地區의 자생적 체계로의 발전, 그리고, 고용, 원료, 인력, 지방행정의 지원, 금융 등 제반 문제가 거론되었던 것 같다. 저는 이상의 토의내용을 “농공지구개발이 성공하려면, 해당지역 단위별로 통합체계가 세워져야 한다”는 말로 해석하고 싶다.

이미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보완한다는 의미에서 몇 가지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다.

첫째, 제 1項의 農工地區豫定地區의 選定問題에 대해서 모든 市・郡에 일률적으로 農工地區를 지정하는 것은 그 실효성이 없지 않겠는가 하는 의견이 있었는데, 약간의 보충설명을 드리겠다. 즉, 제 6 차경제사회발전 계획 기간에 군단위 농어촌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계획에서 農工地區問題가 필수적으로 거론될 것이기 때문에 農工地區開發 基本計劃과 上位計劃을 연계체제로 한다면 현재의 農工地區開發을 그대로 시행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두번째로 지적하고 싶은 것은, 農工地區豫定地區의 立地問題이다. 農工地區는 원칙적으로 노동력확보문제, 교통문제등을 고려하여 農村中心都市를 중심으로 하여 立地를 選定하기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農工地區의 指定과정에서 이 원칙이 무시되고, 과거의 새마을공장처럼 面單位 이하 地域에 農工地區가 지정되기 시작되어, 앞으로 적지않은 문제점을 유발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왜냐하면 面單位以下地域에 農工地區가 立地할 경우, 노동력의 확보가 어려울 뿐 아니라, 통근문제를 야기

시켜, 결국 농공지구의 실패를 가져오지 않을까 판단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現段階에서 農工地區의 立地는 인구 20 만의 市級地域까지 확대가 되었지만, 邑級都市 또는 10 만 이하의 市級都市에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왜냐하면 邑級都市들은 농촌지역의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어 통근권문제가 해결되고, 상당한 노동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離農民을 1 차적으로 흡수할 수 있는 지역이 邑級都市라고 한다면, 農工地區의 고용창출효과라는 측면에서 볼 때 농공지구를 농촌중심도시에 입지시키려는 본태의 기본원칙에 충실하였으면 좋겠다고 판단된다.

세번째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제 6 항의 미분양미개발 지방공업단지의 활성화와 관련하여 地方工業團地와 農工地區의 관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다. 이미 서울대학교의 朴杉沃教授께서 말씀하였듯이 이 문제는 國家의 産業開發體系의 수직적 통합이라는 관점에서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의 인구 30 만 이상의 都市들은 이미 공업단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工業開發獎勵地區 이외의 地域은 農工地區의 次元에서 개발하여 국가전체에서 볼 때, 하나의 단일공업체계를 형성할 뿐 아니라, 政策의 一貫性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이 문제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작년 韓國農村經濟研究院의 농공지구연구보고서에서 지적된 바가 있지만, 郡單位의 邑級都市에 입지한 農工地區는 그 지역의 上位都市의 地方工業團地와 조직체계(network system)을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기존의 淸州工團에서 필요한 원자재 및 중간제품을 農工地區에서 공급하여 두 工團간의 기능적 연결체계를 형성하는 방안, 구미공업단지를 중심으로 한 전자제품의 소규모공단을 형성하는 방법, 그리고 대구의 섬유공업을 중심으로 한 農工地區의 계열화 방안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네번째로, 地方經濟와 農工地區間的 수평적관계문제를 지적하고 싶다. 農工地區에 工場들이 입주하고, 궁극적으로 農工地區開發이 성공할 것인가에 대한 불안감이 없지 않았으나, 다행히 강력한 수도권공업입지 억제 정책과 병행되어, 현재 잘 추진되고 있음은 사실이다. 그러나, 農工地區立住業體에 대한 지원정책보다는 수도의 공업입지역제 정책이 오히려 더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한다. 따라서, 수도권외의 공업입지정책의 변경되었을 경우, 과연 농공지구개발이 제대로 추진될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제가 全經聯측과 접촉해 본 바에 의하면, 그들은 農工地區開發政策을 일시적 현상으로 간주할 뿐 아니라, 현재 시행되고 있는 수도권외의 공업입지정책의 전환가능성마저 은근히 기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때문에 政策의 一貫性이 절대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와 더불어, 몇개의 공장이 農工地區에 入住하였는가라는 것보다, 어떤 종류의 공장들이 입지하여야만 地方經濟와 통합기능을 형성할 수 있으며, 그 통합기능의 형태를 찾아내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농공지구입주하는 업체의 형태를 살펴보면 중소기업이 창업하면서 農工地區에 입주하는 경우도 있지만, 都市에 本社를 가지고 있는 分工場의 형태로 입주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分工場들이 과연 地域經濟에 기여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 부딪치게 된다. 따라서, 本社를 農工地區로 이전하는 방법, 地方財政에 기여도가 큰 업체에 대한 지원우선방안 등과 같은 農工地區와 地域經濟의 통합방법이 시급히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결론적으로 종합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農工地區開發의 평가는 入住業體數보다는 얼마나 효과적으로 지방경제와 통합체제를 이룩하는가 하는 관점에서 논의해야 될 것이고, 따라서 금융지원문제, 지방재정 문제, 지방정부의 상공조직의 강화문제등이 이러한 관점에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경제기획원의 崔課長께서 말씀하신 農工地區開發基本案에 이의가 없으나, 이제 논의의 단계를 벗어나, 가능한 빠른 시일안에 집행체제를 갖추고, 기존조직을 개편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드리며, 이만 마치겠다.

司 會 :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 지금까지 논의된 바를 간단히 요약해 본다면, 원칙적으로 經濟企劃院의 崔課長께서 제안한 案에 큰 이의는 없는 것 같다. 다만 工業團地의 수직적, 수평적 조정문제와 기술인력확보문제가 첨가되었으면 하는 의견들을 말씀해 주셨다. 그밖에 업체선정방법, 행정지원체제개선, 지방금융의 활성화방안 등등이 거론되었는데 이제 정부 측에서 말씀해 주실 차례인 것 같다. 먼저, 建設部의 延

圭現 團地造成課長께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다.

延圭現(建設部 團地造成課長) : 저는 農工地區開發의 立案 초기부터, 참여하여 같이 논의해 왔기 때문에 긴 말씀은 생략하고, 다만 세가지만, 經濟企劃院측에 건의하고 싶다.

첫째로, 제 2 항의 農工地區豫定地區 選定方法에 있어서, 고속도로의 인터체인지의 주변에 農工地區를 선정해 주십사하는 것이고, 둘째로 . 제 5 항의 농공지구 설계 및 시공감리에 관하여 土地開發公社의 참여를 건의 드리겠다. 건설부 산하의 土地開發公社는 공업단지와 택지개발의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고, 各 地方에 土開公의 支社가 위치하여, 업무협조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되어, 農振公과 함께 農工地區의 설계 및 시공감리에 참여케 해주시기를 건의 드린다. 그리고, 제 6 항의 미분양 미개발 지방공단의 활성화 문제에 관해서 원칙적으로 찬성을 한다. 다만 產業基地인 인천과 부평을 農工地區選定에 고려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린다.

司 會 : 다음은 상공부 金相根과장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란다.

金相根(商工部 農村工業課長) : 제가 새로이 말씀드릴 것은 없고 다만 말씀하신 내용중에서 상공부에 해당되는 사항을 중심으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농어촌지역의 商工行政을 강화해야 된다는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둘째, 韓國農村經濟研究院의 徐鍾赫박사께서 말씀하신 새마을공장과 副業團地에도 계속적으로 금융지원을 해야 된다는 의견에 동감이다. 따라서 올해의 農工地區 入住業體에 대한 지원금 278 억원 중 여분을 새마을공장에 지원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

셋째, 忠北大의 成淸根교수께서 제주도의 農工地區指定은 불필요하다고 한 말씀에 원칙적으로 동의한다. 다만, 農工地區와는 관계없이 농산물가공공장은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네번째, 제 5 항의 農工地區設計 및 施工監理문제에 관하여 말씀드리자면, 經濟企劃院의 崔課長께서 제시한대로, 市·郡에서 원한다면, 農工地區의 시공 및 감리를 부분적으로 해당 市·郡에 맡기는 데 동의한다.

다섯 번째, 제 2 항의 農工地區豫定地區 選定方法에 관하여, 서울대학교의 朴杉沃교수께서, 農工地區를 지정하지 않더라도 工業化의 가능성이 있는 지역보다, 개발가능성이 없는 곳에 집중적인 지원을 하자고 말씀하셨는데, 제 생각은 만약 그렇게 될 경우 市·郡에서 개발가능성이 있는 지역은 제외하고 기타지역 즉 工業立地가 어려운 곳에 農工地區를 지정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또한 어차피 150 개의 全市·郡에 農工地區를 지정할 수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개발가능성이 높은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農工地區로 개발하자는 의견을 드리고자 한다.

여섯째, 農村工業의 개념이 무엇이나 하는 문제가 선결되어야 한다고 보지만, 農工地區에 入住하는 업종의 선정은, 우선 농촌의 부존자원을 활용하는 지장산업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농촌에 적당한 그러한 특화산업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해당 市·郡에서 원하는 경우, 농촌의 부존자원을 활용하지 않는 업종도 입주시켜야 될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農工地區의 入住需要와 供給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업체의 입주경쟁이 약한 지역은 문제가 없지만 입주경쟁이 심한 곳에서는 입주수요가 공급보다 많기 때문에, 사업타당성 검토에서 탈락된 업체가 시중은행의 융자나 자기자본만으로 입주하려는 사례가 현실적으로 발생하는데, 이 경우에도 입주를 허락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제 생각이다.

그리고, 일단 사용타당성 검토를 통하여 입주허락을 받은 업체도, 農工地區의 공장부지가 市·郡의 소유로 되어 있고 또한 현재의 금융제도 하에서는 담보 없이는 금융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入住시 매입자금을 지원하여 공장부지를 업체소유로 분양하는 문제도 검토해 보았으면 좋겠다.

司 會 : 좋은 말씀을 해 주셨다. 다음은 農水産部の 趙壹鎬과장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란다.

趙壹鎬(農水産部 農村所得課長) :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는 입주기업 측에서도 이와 같은 토론에 참석하여 어려움을 관계기관과 상의하여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자는 것이다.

다음으로, 農工地區豫定地區의 선정방법에 있어서, 市・郡別로 골고루 나누어 준다는 차원이 아니고, 지방농민들이 혜택을 피부로 느낄 수 있고 소득의 증가를 가져올 수 있게 최대한의 융통성을 발휘하여 무리없이 공장을 유치하였으면 한다. 그리고 앞으로는 農村經濟研究院의 徐鍾赫박사께서 말씀하신 대로 地域의 발전과 주민소득의 균형적 향상 그리고 중심도시의 발전 등을 고려하는 등, 사전 조사를 철저히 하여, 農工地區를 선정해야 겠다는 의견을 드린다.

세번째로 忠北大 成濟根교수께서 農工地區의 설계 및 감리의 지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農振公에서도 支社를 통해 그러한 문제들에 대한 건의를 받아들여 단계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제 생각에는 문제의 발생은 農振公의 설계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공사비를 절감하기 위해 郡에서 상수도의 施工을 제외시킨데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現地를 돌아보면, 보완공사 때문에 農工地區 1個 團地當 6천만 원 내지 1억원 정도의 추가예산이 필요한 실정이어서, 이러한 農工地區에 대해서는 추가소요예산을 반영하여 지원할 생각이다.

네번째, 崔洋夫박사께서, 南原의 東面農工地區의 경우 인력부족 문제가 예상된다고 말씀하셨는데, 農工地區의 人力問題는 정말로 큰 일이라고 본다. 예를 들어보면 영천시에 인접해서 위치한 영천농공지구의 경우, 1,150명의 인력수요가 필요한 데, 기술자는 거의 구하기 조차 힘들고, 18세 이상의 미혼여성 100명 모집에 70명 이상은 구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전남 咸平農工地區의 금평전자의 경우, 장학금의 혜택을 제공하고, 고졸인력 40명을 현지에서 채용하였으나, 어느 정도 기술을 습득하면, 대도시로 빠져 나가 1억 6천만원의 손해가 발생하여 공장장이 해고되고 현재는 오히려, 도시에서 인력을 구하여 채용한다는 것이다.

또한 羅州 農工地區에 입주한 금성산업의 경우는 농산물가공 공장으로

서 현지 아주머니들은 고용하면 농사일이 바쁠 경우 결근을 하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光州에서 통근버스로 수송해 올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다섯째, 남원과 함양의 農工地區는 대상 지역에서 地下水가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실제 농공지구 조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農工地區의 지정전에 정밀한 地質檢査가 실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여섯째, 金鍾基박사께서 農工地區의 지원차등화제도를 도입하자고 말씀하셨는데 좋은 대안이기는 하지만, 실제 실행과정에서 지역구분의 방법이 까다롭고 적용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좀 곤란하지 않은가라고 생각된다.

일곱째, 제 5 항의 農工地區設計 및 施工監理를 市·郡에 맡기자는 의견을 말씀하셨는데, 저도 처음에는 그것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으나, 市·郡을 돌아본 결과, 市·郡이 직접 농공지구의 시공 및 감리를 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무슨말인가 하면, 실제 市·郡에 가보니, 예산확보가 용이치 않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당분간은 農振公에서 계속 農工地區의 시공감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미분양, 미개발 地方工業團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제반 부대시설의 보완작업이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앞으로도 農工地區開發에 관한 좋은 의견이 있으면 수시로 제시해 주십시오 하고 부탁드립니다.

司 會 : 崔洋夫박사께서 보충 설명이 있으신 것 같은데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崔洋夫(韓國農村經濟院 研究委員) : 農工地區開發事業이 이제까지 없었던 새로운 사업일 뿐만 아니라, 투자규모도 대단히 크기 때문에 地方財政 중에서 농공지구개발에 필요한 지방비부담 비율이 지나치게 높은 실정이다. 따라서 지방비 문제는 지방세의 규모에 따라 국고보조율을 조정해 주는 지원차등화방식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한다.

趙壹鎬(農水産部 農村所得課長) : 현재 지방정부의 지방비 수입이 10년 전에 비하여 매우 악화되었다고 본다. 따라서 지방정부의 稅源이 확보될 때까지는 기계발지역이 나후지역에 보조를 한다는 차원에서 農工地區開發事業을 양보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 農工地區의 부지구입비는 지방에서 부담하고, 그외의 것은 국고에서 보조 및 용자해 주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는데 하여튼 현재 지방비의 부족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司 會 : 금융지원문제에 대해서 經濟企劃院 金敬燮과장께 한 말씀 부탁 드린다.

金敬燮(經濟企劃院 投資計劃課長) : 여러가지 좋은 의견들이 제시되었고 대부분의 이슈에 대해서 비슷한 문제의식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저는 農工地區開發를 직접 담당하고 있지 않고, 다만 간접적으로 農工地區의 관리 및 지정에 대한 資金支援문제만 다루고 있다. 이러한 제 입장에서 고찰할 때, 農工地區의 役割이 분명히 정립되어야 할 단계에 이르렀다고 생각된다. 초기에 農工地區開發의 성공 가능성이 문제시 되었으나 이제 어느 정도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판단된다. 이제까지는 지방공업을 육성한다는 차원에서 지방공업장려지구 및 공업유치지역을 지정하여 왔는데 현단계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러한 기존의 지방공단지정지역과 農工地區의 관계를 어떻게 연결하는가라는 문제로 생각된다.

지금까지 지방공업장려지구 및 공업유치지역을 지정하여, 성공적으로 운영되는 곳이 있는가 하면, 미분양 및 미개발의 상태로 남아 있는 곳도 있다. 미분양 및 미개발공단은 대규모이기 때문에 입주요구가 부족한 경우와 공단입지의 부적합성 때문인 경우로 구분될 수 있다.

그 이유야 어떻든 미분양 및 미개발공단은 지방공업장려지구 또는 공업유치지역의 지정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다른 대안이 제시되어야 할 때가 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 農工地區開發事業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제 2 단계의 지방공업육성방식은 農工地區開發方式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다행히 건설부족도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실천에 옮길 단계라고 본다. 차제에 건설부측에 부탁드리고 싶은 바는 지방공단의 현황과악과, 기존의 공단개발방식과 농공개발방식의 접목방안을 찾아내야 한다는 점이다.

앞으로 지방공단을 농공지구와 연계시킨다고 할 때 農工地區開發方案에도 문제점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첫째로 현재 20 만 이하의 도시에 農工地區를 지정함은 物理的인 기준일 뿐이므로 개발지역과 미개발지역의 地方經濟차원에서도 그 기준이 평가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즉 지방공단을 農工地區로 전환한다는 차원에서 생각할 때 “20 만 이하의 도시”라는 대상지역의 한계와 “郡單位의 10 만평 미만”이라는 農工地區의 면적한계도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 무슨말인가 하면, 일률적으로 農工地區의 한계를 정하지 말고, 미개발지역에서 입주수요가 많다면 農工地區를 확대하여 활성화 시켜 주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두번째로, 이미 많이 논의가 되었읍니다만, 農工地區에 어떻게 효과적으로 인력을 供給할 것이냐 하는 문제이다. 都市와 農村을 연결하는 도로망이 발달한 현 상황에서 都市地域에 人力을 빼앗기지 않고 農工地區로 끌어 들일 수 있는 方案이 강구되어야 한다. 물론 대도시에 流入되는 인력을 역류시킬 수 있는 뚜렷한 代案은 없다 할지라도, 최소한 農工地區의 人力問題에 대한 기본적 방향을 정립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지방단위에서 農工地區開發을 전담하는 직원이 보완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郡에서 제시하였는데, 저도 지방행정에 있어서 상공행정의 조직을 재편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한다.

물론 상공행정조직의 개편문제는 부처간의 이해관계도 얽혀 있어 매우 어려운 과제이기 때문에 農工地區開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좋은 의견이 있으면 함께 토의하여 단계적으로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란다.

司 會 : 다음은 李憲穆 청와대비서관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란다.

李憲穆(靑瓦臺秘書官) : 農工地區開發에 관한 깊은 지식은 없다. 다만 이

자리에서 제시된 많은 좋은 의견들을 어떻게, 누가, 그리고 어떠한 방식으로 실제로 집행할 것인가라는 점이 강조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농공지구개발사업의 추진과정을 재평가하여, 좀더 세밀한 정책을 개발해 나가야할 것이다. 아울러 지역별 차등지원문제, 農工地區面積의 한계를 완화하는 문제, 농공개발에 있어서의 수평적 또는 수직적 관계 문제 등, 이제까지 논의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정책에 반영한다면 農工地區開發의 目的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된다.

司 會 : 그러면 결론에 들어가기전에, 더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란다.

徐權植(農振公 農村開發部長) : 忠北大學校의 成濟根교수의 農工地區의 설계 및 감리에 관한 문제 지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다. 저도 蘆川農工地區에 가보았지만, 실수요자가 결정되기 전에 郡에서 지정한 農工地區를 農振公이 설계하였는데 그후 用水가 문제되어, 지하수를 개발하였고, 물탱크는 업체의 입주전이기 때문에 用水의 수요측정이 어려워 보류하고 있는 중에 기업체가 入住하여, 탱크설치가 시작되었는데, 이러한 과정을 모르는 입주업체들이 불만을 표시했던 것이다. 다시 진천에 들르실 기회가 있으면 잘 말씀드리기를 부탁한다.

呂寅喆 : 農工地區의 施工 및 監理는 農振公에서 이제 겨우 두번 한 것으로 아는데, 계속해서 農振公에서 해야 기술축적이 되기 때문에, 市·郡에 농공지구의 시공 및 감리를 맡기는데는 찬성할 수가 없다. 앞으로 추진과정에서, 문제가 심각해지면 市·郡에 농공지구의 시공 및 감리를 맡길 수도 있으나, 현재의 실험적 단계에서는 農振公이 계속하여 施工 및 監理를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한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市·郡의 상공조직을 확대해야 한다는 점이다. 즉 상공조직은 道까지만 구성되어 있고, 그 이상의 하부조직은 너무 빈약하기 때문에 農工地區開發을 계기로 郡까지 2차산업 및 상공업무를 담당

하는 독립된 부서를 설치해 주실 것을 經濟企劃院을 비롯한 중앙부처에 건의드린다.

金東允 : 經濟企劃院의 崔課長께서 말씀하신 주제설명에 별다른 이의는 없습니다만, 현장에서 실무를 담당하는 과정에서 농공지구設計와 관련하여 겪은 고충을 몇 가지 더 말씀드리겠다.

農工地區를 造成하는 과정에서 農工地區의 경계를 설정하는 일, 그리고 300 基의 墳墓를 이장하는 일 등을 제가 직접 현장에서 일을 진행시켰습니다만, 農振公의 地區設計가 이루어지지 않아, 애로사항이 많았다. 農振公의 徐權植 부장께서는 미안한 말씀입니다만, 農工地區의 設計관계로 농진공에 무려 30 ~ 40 번의 전화를 하였고 심지어는 시외전화의 과다사용 때문에 감사에서 지적을 받기까지 하였다. 결국 건설과직원의 협조를 받아 農工地區를 조성하게 된 것이다. 뿐만 아니라 農工地區의 전기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農振公의 設計는 800 만원의 공사비를 책정하였으나 실제 전기공사는 韓電의 設計에 의해 韓電이 직접 실행하는데, 공사비가 1,200 만원이 소요되어, 부족한 공사비를 마련하기 위해 많은 고충을 겪었다.

따라서, 현장 실무자의 고충을 감안하여, 農工地區의 設計 및 施工을 담당하는 기관을 다양화시켜 주십시오 건의를 드리고 싶다.

司 會 : 감사하다. 오늘 제가 시간이 없다는 말씀을 한번도 안드렸는데 이제 많은 시간이 흐른 것 같다. 마지막으로 經濟企劃院의 崔課長께서 결론을 지어주셨으면 고맙겠다.

崔鍾燾(經濟企劃院 産業 1 課長) :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셨는데, 추가적으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다.

먼저 5 항의 農工地區設計 및 施工監理문제는 忠南의 경우는 계속 農振公에서 담당하고, 그외 자체적으로 하려는 郡에는 역시 시범적으로 해당 郡에 農工地區設計 및 監理를 맡기도록 하겠다.

두번째로 農工地區의 立地는 郡의 中心地인 郡廳所在邑에 지정하도록 지침을 주었는데, 面單位까지 농공지구가 지정되는 事例가 발생하고 있다. 물론 해당군은 나름대로, 郡內의 균형적 개발의 목적을 달성할 필요가 있겠지만, 당초 계획은 農工地區를 郡中心地에 지정하여, 郡廳所在地를 성장시키려는 전략이었는데 추진과정에서, 이론과 실제의 괴리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연구과제가 되고 있다.

세번째로 農工地區에 入住하는 業種에 대하여 많은 말씀을 하시는데 農工地區開發이 그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주변의 공단과 연계를 가질 필요가 있고, 그 지역의 소득향상과 관련된 농산물가공산업과 같은 업종을 선정해야 할 것이다. 즉 구미공단에 대규모 전자공업들이 많이 있으니 전자제품의 부품계열공장을 農工地區에 유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입주업종까지 중앙정부에서 지정하는 것은 무리일 수 있다.

작년에 일본에 출장을 가서, 일본의 農村工業化過程을 살펴 볼 기회가 있었다. 일본도 초기에 권장 또는 유치하고자 하는 업종을 지정을 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어느 지방정부에서 무공해산업만 유치하려고 결정하였는데, 막상 입주를 하는 업체가 거의 없다고 한다. 따라서 입주거부당한 업체를 인근의 공단에서 입주시키는 사례가 있었다고 한다. 지금 우리나라의 실정은 지방정부에서 업종을 선택할 정도로 여유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다. 또한 중앙정부에서 지나치게 간섭을 하면,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점에 대해 좋은 의견이 제시면, 나중에라도, 많은 조언을 해주시기 바란다.

네번째로, 農工地區의 人力供給問題는 저희 經濟企劃院측에서도 매우 고민하고 있다. 그래서 연구소에 계신 분들에게 우리나라의 郡單位의 可用人力이 얼마인지를 연구해 주십사고, 부탁드린다. 심지어 인력부족이 심한 농촌지역에 農工地區를 설치하려는 정책자체에 문제가 있는게 아니냐 하는 의견도 있는 데 제 생각은 조금 다르다. 일본과 대만의 경우도 인력문제가 있었다고 한다. 제가 작년에 일본에 가서 人力問題를 집중적으로 조사해 본 결과에 의하면, 일본도 농촌공업의 인력부족문제

가 심각했다고 한다. 그래서 기숙사를 지으면서, 공장을 입주시켰는데 그후 농기계를 사서 농사를 짓고, 잉여노동력이 공장에 흡수되어, 農業機械化를 가속화 시켰던 것이다. 따라서 유출인구가 줄고, 인구이동의 U-턴현상이 나타나고, 5년정도 후에는 초기의 30~40%밖에 안되는 현지주민의 취업이 80~90%까지 증가하였다고 들었다. 일본의 경우이지만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따라서, 우리도 道の 農民教育院을 개편하여, 직업훈련기능을 담당케 하고, 실업계고등학교의 工業教育을 강화하여 農工地區의 人力供給問題에 대비해야겠다고 생각한다. 물론 어떤 業種이 入住할지 모르는 단계에서 人力供給計劃을 수립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지만, 사후의 문제는 노동부와 협의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다. 더 좋은 대안이 제시면 도와 주시기 바란다.

다섯번째로 제 3 항의 農工地區指定制限과 支援差等化問題에 관해 말씀 드리겠다.

農工地區의 延面積을 일률적으로 10 만평 이하로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산간오지에 農工地區를 50 만평을 조성하겠다면 제한할 필요가 없다. 다만 지나치게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 즉 大田以北 地域처럼, 農工地區의 연면적 상한선이 없다면, 너무 많은 공장들이 입주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지역은 제한하자는 뜻이다. 따라서, 전국에 일률적으로 農工地區의 연면적의 상한선을 적용하지는 않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그리고 農工地區의 地域別 差等化問題에 있어서도, 이미 農水産部の 趙課長께서 말씀하신대로, 현실적으로 지역을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 즉 보조를 받지 않은 郡의 불만을 납득시키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회적인 제한방법으로 농공지구의 상한선을 10 만평 이하로 하는 규제방법을 사용케 된 것이다. 이러한 경제기획원의 고충을 이해하여 주시고, 좋은 의견이 있으면 언제라도, 조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崔洋夫(農村經濟研究院 研究委員) : 중앙정부에서 중요정책결정을 하는

실무담당 課長들께서 여러분 참석하였기 때문에 한 말씀 더 드리겠다. 다름이 아니라, 農工地區開發政策이 여러 부처가 합동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러한 성격의 사업은 우리나라에서 처음이기 때문에, 지방정부에서 農工地區開發政策의 주체가 어디인지를 모르고 있다는 점이다. 즉 지방정부에서 각 부처별로 강조사항 및 지시사항이 다를 경우 혼선을 빚게 되고, 결국 農工地區開發에 차질을 가져 올 수 있기 때문에 실무부처간의 협의체제를 확실하게 해야겠다는 것이다. 물론 기본방향은 이제 어느 정도 골격이 갖추어졌으나, 실제 추진과정에서 협의사항들이 일관성있게 지방정부에 전달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물론 각 부처별로 업무역할이 다르지만, 農工地區開發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 부처간의 합의를 전제로 한 일관성있는 업무추진을 해 주실 것을 각 부처 실무과장들께 거듭 부탁드립니다.

司 會 : 오랜시간 동안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셨다. 이상으로 오늘의 정책간담회를 모두 마치겠다. 대단히 감사하다.

附錄 1.

開 會 辭

韓國農村經濟研究院 副院長 成 培 永

오늘 政府 및 關係機關의 專門家들을 모시고 農工地區開發에 관한 政策懇談會를 개최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여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農工地區開發에 관한 政策懇談會를 개최하게 된 것은 示範事業을 거쳐 이제 本格化段階에 들어가고 있는 農工地區開發의 효율적인 政策推進方案을 검토해 보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1983 年末 「農漁村所得源開發促進法」이 制定, 公布된 이래 강원도 횡성군을 비롯한 全國 7 個 市·郡에 農工地區가 조성되고 있으며, 1985 年에도 전국에 총 21 個의 農工地區 豫定地區를 指定하여 현재 해당 郡에서는 入住業體의 誘致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努力하고 있으며, 今年末까지는 15 個 內외의 農工地區가 추가적으로 造成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한 政府는 農漁村綜合對策을 통해 농촌지역의 農外所得增大를 위하여, 第 6 次 經濟社會發展 5 個年計劃이 끝나는 1991 年까지 전국에 총 100 個의 農工地區를 造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와 같은 計劃은 이제까지 볼 수 없었던 획기적인 政策構想으로서 政府의 農家所得增大를 위한 강력한 政策意志를 나타내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상과 같은 획기적인 農村工業開發의 長期構想과 지난 2 ~ 3 年間의 政府 및 關係機關의 많은 努力에도 불구하고 그 具體的인 政策의 推進에는 좀더 補完, 發展시켜야 할 政策課題들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例를 들어 農工地區 豫定地區 선정방법이나 附帶施設

의 범위, 設計 및 施工監理, 기타 農村工業推進體系나 농촌지역의 技能人力確保, 기존의 國土開發計劃 및 地方工團과의 연계문제등 미흡한 부분이 아직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關係專門家들이 함께 모인 根本趣旨는 그동안 農工地區開發事業의 推進過程에서 발생되고 있는 이상과 같은 問題點들을 허심탄회하게 討論함으로써 보다 効率的인 農工地區開發의 推進方向을 제시하는데 있습니다. 따라서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의 기탄없고 건설적인 意見交換이 이루어져서 모처럼 政府가 많은 努力을 기울여 추진하고 있는 農村工業化政策을 보다 効率的으로 추진하는데 참고가 될 수 있기를 바라마지 않는 바입니다.

본 政策懇談會에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986年 7月 2日

附錄 2.

參席者 名單

座 長	成 培 永	(韓國農村經濟研究院 副院長)
主題發表	崔 鍾 璨	(經濟企劃院, 産業 1 課長)
討論參加者		
政 府	李 憲 穆	(青瓦臺秘書室 秘書官)
	金 敬 燮	(經濟企劃院 地域投資計劃課長)
	趙 壹 鎬	(農水產部 農村所得課長)
	金 相 根	(商工部 農村工業課長)
	延 圭 現	(建設部 團地造成課長)
	呂 寅 喆	(忠南道 輸出工業課長)
	金 東 允	(江原道 橫城郡産業課長)
學 界	朴 杉 沃	(서울大學校 地理學科教授)
	成 潛 根	(忠北大學校 農業經濟學科教授)
研究機關	崔 洋 夫	(韓國農村經濟研究院 研究委員)
	徐 鍾 赫	(韓國農村經濟研究院 首席研究員)
	金 鍾 基	(韓國開發研究院 研究委員)
	李 廷 植	(國土開發研究院 首席研究員)
關聯團體	徐 延 植	(農業振興公社 農村開發部長)
	金 容 和	(中小企業振興公團 農村工業部長)

빈

면

農工地區開發의 효율적인 推進方案

1986년 월

發行人 金 榮 鎮

發行情處 韓國農村經濟研究院

☐☐☐ 서울특별시동대문구회기동 4 - 102

登錄 1979年 5月 25日 第 5 - 10號

電話 962 - 7311

印刷 (株) 文 苑 社
